

보도	2024.1.19.(금) 석간	배포	2024.1.18.(목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상품제도팀	책임자	팀 장 김현중 (02-3145-7466)
		담당자	선 임 김남혁 (02-3145-7468)

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겠습니다.

주요 내용

- '24.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(이하 '실손보험') **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**가 시행됨에 따라,
-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,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'**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**'을 구축·운영하겠습니다

	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	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
도입 취지	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 방지 및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	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 방지
주요 내용	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·할증(1~5단계 구분) ※ 할증 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되며, 대부분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	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(App)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및 보험료 할인·할증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* 보험사는 문자·알림톡 등을 통한 안내 병행 ※ 주요 조회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(누적) ▪ 비급여 보험료 할인·할증 단계 ▪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▪ 할인·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(서류 첨부기능 포함)
	의료취약계층*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·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 * ①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② 장기요양등급 1·2등급자에 대한 의료비	

I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

-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'**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**'가 '24.7월부터 시행(보험료 갱신시 적용)됩니다.
- 이에 따라, 보험료 갱신前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,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,
 - ※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, 대부분의 소비자(70% 이상)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(할증 대상자는 1.8% 수준으로 추정)
-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>

- ◇ (주요내용) 보험료 갱신前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~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(특약)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
 - 보험료 할인·할증 등급은 갱신後 1년간만 유지되며,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·할증前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

구분	1등급(할인)	2등급(유지)	3등급(할증)	4등급(할증)	5등급(할증)
할인·할증률	-5% ^{주)}	-	+100%	+200%	+300%
비급여 보험금 수령액	보험금無	100만원 ↓	150만원 ↓	300만원 ↓	300만원 ↑
가입자 비중(추정)	72.9%	25.3%	0.8%	0.7%	0.3%

주) 할증된 보험료 총액과 할인된 보험료 총액이 동일하도록 할인을 산출(회사별 실제 할인율은 상이)

- ◇ (적용 제외)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①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, ②장기요양등급 1·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·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

※ 비급여 보험료 할인·할증 예시(※ 연령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분은 제외)

	최초 계약시 (23.8.1.)	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(100% 할증)	1년後 갱신시 (24.8.1.)	비급여 보험금 수령 無 (5% 할인)	2년後 갱신시 (25.8.1.)
급여(주계약)	5,000원		5,000원		5,000원
비급여(특약)	7,500원 ^{주1)}	* 할인·할증 3단계	15,000원	* 할인·할증 1단계	7,150원 ^{주2)}

주1) 상기 보험료는 예시 수치이며, 실제 수치는 보험회사·연령·성별 등에 따라 상이
 주2) 할증前 비급여 보험료(7,500원)를 기준으로 보험료 5%(추정) 할인 적용

II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·운영

-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('24.7월)에 따라,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「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」을 구축·운영하겠습니다.
- (주요내용)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(App)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·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
 - *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①보험금 지급, ②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, ③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,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 (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 안내 병행 실시)
- (조회내용) ①비급여 보험금 수령액(누적), ②보험료 할인·할증단계(예상), ③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, ④할인·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* 안내(서류 첨부기능 포함) 등
 - *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등급 관련 입증서류 등
- (구축시기) '24.5월(예정)
 - * 단,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여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, 알림톡 등으로 안내 가능

※ 시스템 구축화면 예시(案)

이름	계약번호	대상기간	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(할인·할증 대상 누적금액)	할인·할증 단계	비고
홍○○	1234567	'23.1.1. ~'23.12.31.	130만원	3단계 (100% 할증)	20만원 추가 수령시 4단계로 변경 * 4단계 : 200% 할증

번호	지급일자	비급여 보험금 지급액	비급여 보험료 할인·할증 기준 대상		
			포함여부	제외 신청	
1	'23.7.1	30만원	Y	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증명자료 첨부
2	'23.9.4	60만원	Y	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증명자료 첨부
...

III 향후계획

-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「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」을 개정('24.4월 시행)할 예정이며,
 -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